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07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이주영 · 이준석 · 천하람
이소희 · 김예지 · 안철수
박지혜 · 박준태 · 이수진
최보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이와 함께 병원에서 통보된 아동의 출생신고가 정해진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법원에 기록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서류상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실제로 해당 아동이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 관련 권한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서류상으로만 출생이 신고될 뿐 해당 아동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피해아동 중 43.3%가 1세 미만으로 출생신고 전후의 시기는 아동의 생

사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자체가 위기신호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동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기아동 발굴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들이 위기 아동 발굴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기에 확인 및 개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4제1항제6호 및 제3항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제7항(중전의 제6항)·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3항에 따라 시·읍·면의 장의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자와 그 모에 관한 정보로서 같은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4항-----

-----.

⑧ 제4항-----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